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벌금 · 징역 부과기준

▣ 진폐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법조항	위 반 사 항	조 치 기 준	비 고
제7조 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7조 제3항	작업환경개선 지시위반	30일 이내에 시정토록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7조 제4항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즉시 과태료 부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서류 미보존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9조	채용시 건강진단 미실시	경고후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 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정기건강진단 미실시	경고후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	임시건강진단 미실시	경고후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 제1항	건강진단실시결과 허위작성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15조 제2항	건강진단실시 집계표 미제출	즉시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조항	위 반 사 항	조 치 기 준	비 고
제15조 제3항	건강진단실시 결과표, 흉부엑스선 사진 미제출	즉시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20조 제1항	진폐근로자 채용금지위반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제2항	작업전환조치 지시 위반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1,000만원 이하의벌금
제20조 제3항	근로시간 단축·작업 장소변경 미조치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퇴직금 미지급 및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불이익한 처분금지 위반	집무규정에 준하여 조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 금지 위반	집무규정에 준하여 조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흉부엑스선 사진 및 작업 전환에 관한 서류 미보존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44조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기피 또는 허위보고	1차 경고후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본 코너는 금년 1월부터 12회에 걸쳐 연재되어 12월호를 마지막으로 끝이 남에 따라 2006년 1월호 부터 새로운 코너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서 본 코너를 대체할 코너에 대한 의견을 아래 메일로 보내 주시면 편집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safeeng@hanmail.net (담당자 최종덕)